

## ■ 부서별 협조 요청사항

부서	협조사항	비고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열기구(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및 화기 사용금지(실내 흡연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열온수히터(돼지꼬리), 전기히터 등 사적 용도 및 불법개조용품은 발견시 압수</li> <li>나. 실내 개인 용도 시설물(바닥난방시설, 간이 침대 등) 발견시 철거 및 압수</li> <li>다. 건물 내 흡연금지</li> </ul> </li> <li>2. 퇴실 시 미사용 전기 기기의 전원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러그 뽑기, 멀티콘센트 전원 끄기</li> </ul> </li> <li>3.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필요시 안전관리팀 요청</li> </ul> </li> <li>4. 사적 용도의 디지털도어록 설치 금지 - 시설팀 교체 요청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및 출입이 불가)</li> <li>5. 소화전·방화문 앞, 계단 및 복도내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 적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해당 물품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li> </ul> </li> </ol>	
총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내·외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재활용품(박스, 파지 등)의 적치 금지</li> <li>2. 각처 환경관리실내 취사 및 개인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밥솥, 휴대용 가스버너 등) 사용 금지</li> <li>3. 각 건물 EPS실(전기 분전반 및 전기 케이블이 설치된 실) 청소 용품 비치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 금지</li> </ol>	
학생지원팀/ 생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아리방, 생활관내 취사 및 전열기구 사용 금지 및 압수 조치</li> <li>2. 동아리방내 개인 용도 시설물(바닥난방시설, 간이침대 등) 발견시 철거 및 압수 조치</li> <li>3. 생활관 각 실내 흡연금지</li> <li>4. 교내 금연 및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 홍보 및 캠페인 실시</li> </ol>	

부서	협조사항	비고
교학팀	1. 실험실(실습실)내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점검 2. 화학물질 사용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철저 및 관리감독 3. 연구실·실험실(실습실)내 <b>취사 및 전열기구 사용금지 및 압수 조치, 개인 용도 시설물(바닥난방시설, 간이 침대 등) 발견시 철거 및 압수 조치</b> 4. 실내·외 <b>화재 위험성이 높은 실기물품(각재, 합판, 액자 등)의 적치 금지</b> 5. <b>연구실 및 실험실 사적 용도의 디지털도어록 설치 금지</b>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및 출입이 불가) 6. 지정된 장소 외 <b>흡연금지 홍보 및 단속 실시</b>	
생활협동조합	1. 임대매장 전기 및 가스설비 정기적인 점검 2. 임대매장내 시설물 개조시 시설팀 및 안전관리팀과 협의 3. 영업 종료 후 최종 퇴실시 전기차단기 및 가스밸브 차단	

## ■ 화재 발생시 법적 처벌

### ※ 과실에 의한 실화죄 성립시

#### 1. 관리책임자 및 화재원인 제공자

##### 1) 형법 제170조(실화)

- 과실로 인한 경우 위법행위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 2)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업무상 과실

-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통 사람보다 더 무거운 주의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한 업무자는 보통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임

##### \* 중대한 과실

- 행위자가 극히 조그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결과 발생을 인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써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해당함

#### 2. 소방안전관리자(담당직원) 및 건물주(본교는 이사장)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전기화재 주원인 및 예방법

### 1. 합선(단락)

전선로에서 두 개 이상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되는 경우로, 전선의 과도한 눌림, 꺾임, 잡아당김, 사이에 끼임, 다른 물체와 마찰되어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선 주위에 먼지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체적되어 있다면 미세한 전기 불꽃에도 더더욱 발화가 쉽다.

#### ※ 예방법

- 가. 정격용량 제품 사용
- 나. 용량에 적합한 규격전선 사용, 노후전선 교체
- 다. 못이나 스템플러로 전선 고정하지 않기
- 라. 바닥이나 문틈을 통과하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 마. 스위치, 분전함 정기점검 및 가연성 물질 제거

### 2. 누전

전류가 설계된 부분 이외의 곳으로 흐르는 현상으로, 누전에 의한 화재는 비가 오는 습한 날에 누전차단기가 자주 동작을 했다든지, 오래된 건축 전기시설물, 빗물의 누수가 있는 곳 등을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다.

#### ※ 예방법

- 가. 배선의 피복 손상 여부 수시 확인
- 나. 전기시설물은 습기나 먼지가 없는 곳에서 사용

### 3. 과전류(과부하)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많은 부하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선에 많은 전류가 흘러 이로 인해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다.

#### ※ 예방법

- 가.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 나. 전기기기의 전기용량에 맞는 적합한 규격전선 사용

### 4. 스파크

스위치를 개폐할 때 또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거나 뽑을 경우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때 주위에 가연성가스, 증기 및 분진 등이 있으면 착화되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다.

※ 예방법

- 가. 대전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접지
- 나. 톱밥,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 다. 주변공기에 습도를 가함
- 라.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끄

5. 접촉불량

전선과 전선끼리 연결, 전선과 단자 연결, 플러그가 콘센트에는 꽂히는 것은 서로 접촉하는 것인데 접촉부분이 과도한 당김으로 서로 끊어지고, 잘 꽂히지 않아 이탈되고, 진동으로 이완되고, 전기 납땀에 떨어지고, 조임나사가 풀리고, 노후로 접촉불량이 되면 접촉저항 증가로 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다.

※ 예방법

- 가.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뽑는다.
- 나. 플러그를 완전히 꼽거나 접촉 불량시 플러그를 콘센트에 맞는 것으로 교체한다.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

1. 실험,실습 이외의 **사적용도의 전열기구 절대 사용금지**
  - 불시 점검 시 발견될 경우 압수 조치
2. 불량 전기배선 제거 및 교체
  - 필요시 시설팀으로 요청
3.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 사용 금지**
4. 방을 비울 때는 조명등은 필히 소등하고, **전기기기는 반드시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제거 후 퇴실**
5. **일과 후 허가된 지정장소 이외에는 전원을 차단**

##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p>주위에 큰소리로 알린다.</p>	<p>신속히 대피한다.</p>	<p>119에 신고한다.</p>	<p>주위 사람과 협력하여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한다.</p>

1.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2.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3.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
4. 아래층으로 대피 할 수 없을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5. 무섭다고 숨으면 절대 안 됩니다.
6. 아끼는 물건을 챙기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됩니다.
7. 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봅니다.
  - 손잡이가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대피을 찾아간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8.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9. 119에 신고시 불이 난 곳(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 이름 등)을 또박또박 말해야 합니다.

## ■ 연기 속 대피요령

			
<p>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한다.</p>	<p>자세를 최대한 낮춘다.</p>	<p>다른 손으로 벽을 잡는다.</p>	<p>비상구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p>

1. 화재 시 연기는 실내상층에 위치하고 깨끗한 공기는 바닥으로부터 30cm~60cm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나면 옷가지를 사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신속히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2. 대피시 복도 및 계단의 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대피할 때 문을 닫으면 열과 연기의 확산을 줄일 수 있으므로 대피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실 출입문이나 비상구를 열고 나오기 전에 손등을 손잡이에 살짝 대어 봅니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불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므로 가급적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 ■ 화재로 인하여 건물에 고립시

		
<p>손잡이가 뜨거우면 나가지 않습니다.</p>	<p>창문이나 문틈을 수건으로 막습니다</p>	<p>창문에서 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p>

1. 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거운 경우 실내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문밖에 불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출구를 찾거나, 다른 출구가 없을 때에는 침착하게 아래의 요령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모두 막습니다.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나 문틈에 담요, 시트, 수건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습니다.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여 연기를 피해야 합니다.
3. 창문을 통해 구조요청을 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수건이나 옷가지 등을 흔들면서 구조요청을 합니다.  
무섭더라도 참을성 있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함부로 창 밖으로 뛰어 내리지 않습니다.

## ■ 소화기·소화전 사용 방법

### 1. 소화기 점검 방법

- 가. 안전핀과 노즐상태 확인 등 이상유무 수시 점검
- 나.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약제의 유동여부("쉬" 분말약제 흘러 내리는 소리) 확인
- 다. 압력게이지의 지침이 **녹색**(정상상태)부분에 있는지 확인



### 2. 소화기 관리

- 가.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 나.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장소에 설치



### 3. 소화기 사용 방법

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



②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



③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잡



④ 불길 주위에서 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 4. 소화전 사용 방법



1.문을 열고 호스와 관창을 꺼낸다



2.화재발생장소로 이동한다.



3.벨브를 왼쪽으로 돌린다



4.화점에 방사한다.